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">1월 7일(월) 조간 (1.6. 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19.1.4. / (총 3매)	담당부서	출산정책과
과 장	손 문 금	전 화	044-202-3390
담 당 자	박 광 자		044-202-3395

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!

- 보건복지부,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내용 확대 -

<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>

구분	2018년	2019년	비 고
지원대상	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	기준중위소득 <u>180% 이하</u> 및 의료급여수급자	
지원내용	체외수정(신선배아)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	체외수정(신선배아, <u>동결배아</u>) 및 <u>인공수정</u> 시술비 중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금 및 <u>일부분인부담금</u>	
지원항목 (신설)		유산방지제, 착상유도제(시술당 최대 20만 원), 배아동결·보관 (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)	약제 고시 기준 하에 서 적용
지원횟수	체외수정(신선배아) 4회	<u>체외수정(신선배아 4회,</u> <u>동결배아 3회), 인공수정 3회</u>	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
지원금액 예산	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47억 원	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84억 원	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-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'17.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.
 -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(신선배아)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'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-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180%(130%→180%) 이하에게 까지 확대
 - * '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%(370만 원), 180%(512만 원)
 - (지원횟수) 체외수정(신선배아 4회, 동결배아 3회)과 인공수정(3회)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
 - (지원항목)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, 배아동결·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,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(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)
 - 이를 위한 '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 ('18년 47억 원에서 137억 원 증가)
-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 -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·우울증상담센터 4개소(중앙 1, 권역 3)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·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·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(난임 원인, 임신 시도 기간, 시술 시작일, 시술 유형 등)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“비혼,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신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, 고위험 임신부·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향후 임신 전, 임신, 출산 전·후,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, 산후조리원·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